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2019.09.24 조례 제1290호

>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05-4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8. 9.22, 2015.7.1., 2019.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2019.9.24.>

-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008. 9.22>
-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9.9.24.>

-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신설 2019.9.24.>
-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8. 9.22, 개정 2015.7.1., 2019.9.24.>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9.24.>]

제5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①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4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9.24.>]

제6조(급여대상자 결정) ①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 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개정 2015.7.1.>

[제5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24.>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7.1., 2019.9.24.> [제6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4.>]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9.9.24.> [제7조 제6조 2019.9.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9.24.>]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19.9.2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